

학 칙

2026. 8. 1

한 국 외 국 인 학 교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목적)

한국외국인학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미국 위주의 교과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설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국문으로는 ‘한국외국인학교’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TERNATIONAL SCHOOL’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08 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5개 학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제 3 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 수)

유치원 과정은 4학급, 초등학교 과정은 15학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교과제로 운영하며, 총 29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 정원)

과정	학년별	학급수	편제	학년별 정원	학교 총 정원
Kindergarten	PK	1		13	700명
	JK	1		22	
	SK	2		40	
	소계	4		75	
Elementary School	1	3		75	
	2	3		75	
	3	3		75	
	4	3		75	
	5	3		75	
	소계	15		375	
Middle School	6	2	교과제 수업	50	
	7	2	"	50	
	8	2	"	50	
	소계	6		150	
High School	9	1	교과제 수업	25	
	10	1	"	25	
	11	1	"	25	
	12	1	"	25	
	소계	4		100	
총계		29		700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8조 (교육과정)

미국 학력인증에 필요한 미국 교과과정 위주로 편성한다.

제9조 (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각 학년당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평가)

- ① 평가는 소정의 시험과 교사의 재량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하며,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 학기)

학년은 2개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8월 중에 시작하여 다음해 1월 중에 종강하며, 제2학기는 다음해 1월 중에 시작하여 동년 6월 중에 종강한다. 단, 유·초등과정은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
- (2) 공휴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
- (3) 각 계절방학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비상재해나 기타 필요 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개교 기념일)

본교의 개교 기념일은 8월 18일로 한다.

제 6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과 학습발달 상황 및 행동발달 상황에 따라 개별 사정하여 정한다.

제15조 (유급 및 월반)

- ① 학교장은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업을 수료하지 못하였거나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 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보다 현저히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는 교장단 심의 후 1개 학년 월반시킬 수 있다.

제16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제17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서류)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결정)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자가 소정의 사정 절차와 심의를 통과하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고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제19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시행시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시행시기는 사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한다. 단, 필요시 학교장의 판단으로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8 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 장학금

제20조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

- ①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비용의 금액과 징수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에 대하여 공고한다.
- ②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은 학교의 환불 기준표와 환불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의2 (체납자 조치)

3개월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한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장학금 및 학비감면)

학업 장려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9 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2조 (휴학)

-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 ②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 시기 등을 학교장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한다.

제23조 (전학 및 자퇴)

전학 또는 퇴학하려는 자는 보호자가 서명한 사유서와 전(퇴)학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가 있다.

제25조 (징계)

학교장은 학사운영 및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와 징계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① 교과목 평점이 일정 수 이상 낙제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른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 ② 학칙 위반의 경우에는 사안별 위반 수준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부여한다.
-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2) 1년에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4)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 (5)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

제 10 장. 조직기구 및 직무분장

제26조 (조직기구)

본교의 조직기구는 총교장(학교장), 학사교장, 학년 그룹 교장, 교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구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교장 및 교원의 자격)

각 학년 그룹의 교장 및 교원의 자격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이 있는 자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자로 한다.

제28조 (교장 및 교원의 임무)

총교장은 학교장으로서 학사 및 행정운업을 총괄한다. 학사교장은 학사를 관리하고 총교장 위임하에 학교를 대표하며, 학년 그룹 교장은 학년 그룹의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직무상 해당 학년 그룹을 대표한다. 교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방침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생 안전관리, 학부모와의 교육적 소통,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장. 학 칙 개 정

제29조 (학칙 개정)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 개정 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학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경과조치)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